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선욱

전화 041-620-4302/ 팩스 041-620-4452

보도자료

2019. 1. 16.(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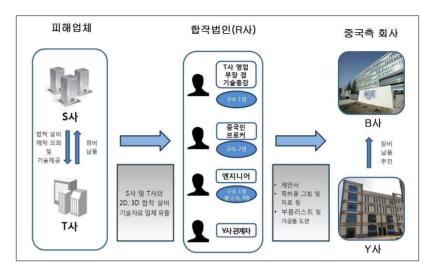
자료문의 :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 041-620-4304 주책임자 : 부장검사 장성철

제목 S社의 휴대폰 OLED 패널 합착기술 유출 사범 8명 기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된 T社(S社의 휴대폰 패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의 보강수사를 통해,
- T社의 영업부장 등이 중국인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u>중국에 합작회사를</u> 설립하고, 이를 통해 S社에서 보유한 국가지정 첨단기술인 '3D OLED 패널 합착(Lamination)' 기술을 비롯한 OLED 패널 합착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 범행을 주도한 <u>T社 영업부장, 한국계 중국인 브로커 2명, 前 T社의 엔지니어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前・現 T社 엔지니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음</u>
- ※ OLED 패널 합착기술이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패널과 커버글라스 등을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공상태에서 면대면으로 합착하는 기술로, 평면용 2D 기술과, 곡면용 3D 기술 등으로 구분됨
- ※ S社는 전세계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95.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T社는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을 제작하는 S社 협력업체로 2017. 12. 기준 매출액 1조 1,384억 원, 시가 총액 1조 282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 회사임

Ι

사건 개요



- 피고인들은 중국 Y社(S社의 경쟁사인 중국 B社에 설비납품 추진) 관계자들과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다음, S社와 T社의 기술정보를 빼돌려 OLED 패널 합착 장비를 제작한 후 B社에 납품하기로 공모, 2018. 3.경 중국 허페이에 합작법인인 R社를 설립
- 2018. 3.~5.경 T社에서 보유하고 있던 S社와 T社의 3D 합착 설비사양서 및 설계 도면, 2D 합착 설비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부정 취득
- 위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제안서, 도면 등을 작성한 후 Y社의 대표에게 수시로 송부하고, 2018. 5.경 B社의 관계자를 만나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 죄명 :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

수사 경과

- 18. 3. 1. I社, ㄹ○○(엔지니어)에 대하여 기술유출혐의로 고소
- '18, 3, ~ 9. 충남지방청, 고소사건 수사 중 T社 기술이 유출된 사실 확인
- 18. 9. 28. 충남지방청, ¬○○ 구속, ∟○○ 등 7명 불구속 송치(총 8명)
- '18. 10. 12. 법원, ¬○○에 대한 적부심 인용, 석방(T社와의 합의 이유)
- '18. 10. ~ 12. 검찰, 피의자들의 계좌, 이메일 및 시무실 등 입수수색, 관련자 조사
 ※ 송치된 T社 기술 뿐 아니라 S社에서 보유한 국가지정 첨단기술 등이 대량 유출된 사실 확인
- '18. 12. 27.□ □ ○○(T注 영업부장) 재구속, □ ○○(각 중국인 브로커) 구속
- '19. 1. 7. ㄹ○○(엔지니어) 구속

Ш

수사 결과

1. S社의 첨단기술 중 일부 해외 유출 시도 적발

- 피고인들이 T社에서 유출한 기술정보에는 T社와 S社의 3D OLED 패널 합착 기술 및 신제품에 관한 기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
- S社가 생산하는 엣지패널은 '갤럭시 엣지 시리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 이 패널 생산에 이용되는 3D OLED 패널 합착 기술은 S社가 약 6년 동안 엔지니어 38명,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함

2. 중국에 직접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범행

- 주로 국내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해외의 경쟁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직하면서 기술을 빼돌리던 범행 수법에서 나아가, 국내 기업의 전·현직 직원과 중국인 브로커 등이 중국 기업인과 공모하여 중국에 합작회사를 직접 설립한 후 빼돌린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생산, 판매하려한 사실을 확인함
- ※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유출에 따른 회사 수익이 직접 기술유출 사범에게 귀속되는 형태가 되어, 범행 동기가 강화되고 기술유출 범위도 확대될 우려 발생

3. 추가수사로 S社의 피해 밝히고 기술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처

● T社 기술에 대한 유출 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S社의 주요 기술까지 유출된 사실을 밝히고, T社 영업부장, 중국인 브로커, 엔지니어 등 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들을 구속하는 등 주요기업의 기술 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

4.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피해 최소화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을 저장해 둔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압수하고, 유출된 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주요 피고인들을 구속함으로써, 국내 첨단기술의 추가적인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함□

[별첨]

피고인별 처분 내용

연번	피고인	직책	범죄사실	처분
1	700	T社 영업부장	합작회사 설립, 기술자료 유출, 제안서 및 설계도면 작성 지시	구속기소
2	0	한국계 중국인, 무역회사 운영	ㄱ○○에게 최초 범행 제안, 합작회사 설립, 자금 투자, 통·번역 담당	구속기소
3	0	한국계 중국인, 무역회사 직원	ㄱ○○에게 최초 범행 제안, 통·번역 담당	구속기소
4	0	엔지니어	제안서, 설계도면 등 작성	구속기소
5	0	엔지니어	제안서, 설계도면 등 작성	불구속기소
6	н00	엔지니어	제안서, 설계도면 등 작성	불구속기소
7	人〇〇	엔지니어	제안서, 설계도면 등 작성	불구속기소
8	0 00	설비업체 운영	ㄱ○○에게 최초 범행 제안, 합작 회사 설립	불구속기소